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안 번호	760
----------	-----

제출년월일 : 1998.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현재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1.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안 제4조)
 - 음식물쓰레기는 감량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적정 처리방법등 (안 제6조)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재활용(사료화, 퇴비화 등)하거나, 감량처리(분쇄, 압축, 탈수, 건조 등)하여야 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안 제7조)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안 제10조)
 -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다.
5.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안 제13조)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생활 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 ①생활폐기물배출자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해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시장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②재활용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은 다음 각호의 배출요령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2.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행구어 배출
3. 비닐·병뚜껑·폐각류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제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여부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지침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7일이내에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상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 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 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 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6조제2항 관련)	30	50	100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자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월	kg/월		
자가재활 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 용계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illegible]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출자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식점 : 객실·객실 합계면적 : m'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 환 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위탁량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위와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관 계 법 령 발 취

폐 기 물 관 리 법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廢棄物管理法

의한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에 의한 廢棄物의 처리에 있어서 海域排出에 관하여는 海洋汚染防止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管轄區域안의 廢棄物의 排出 및 處理狀況을 파악하여 廢棄物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여야 하며, 廢棄物의 收集·運搬·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資質向上으로 廢棄物 處理事業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住民과 事業者의 清掃意識함양과 廢棄物 發生抑制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②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고, 그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③國家는 指定廢棄物의 排出 및 處理狀況을 파악하고, 指定廢棄物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④國家는 廢棄物處理에 대한 技術을 研究·開發·지원하고,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며, 서울特別市·直轄市·道(이하 “市·道”라 한다)간의 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 <改正 95·8·4>

第5條 (廢棄物의 廣域管理) ①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2이상의 市·道 또는 市·郡·區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을 廣域的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廣域廢棄物處理施設(指定廢棄物公共處理施設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 <改正 95·8·4>

②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域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운영을 總理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8·4>

第5條의2 (廢棄物處理施設에의 搬入手數料) ①第4條第1項 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機關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搬入되는 廢棄物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費用(이하 “搬入手數料”라 한다)

(추 66)

의 溶出등을 分析함에 있어서 그 分析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廢棄物公
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2章 廢棄物の 排出 및 처리

第12條 (廢棄物の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5·8·4)

第13條 (生活廢棄物の 처리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排出되는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 (改正 95·8·4)

②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廢棄物處理業者”
라 한다)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
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数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5·8·4)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数料를 정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廢棄物排出量에 따라 手数料를 차등 徵收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新設
95·8·4)

第14條 削除 (95·8·4)

第15條 (生活廢棄物排出者の 處理協助등) ①生活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建物の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 “生活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관할 市·郡·
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保全상 支障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廢棄
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減量하여 排出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②生活廢棄物排出者는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生活廢棄物을 種類·性狀別로 分離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 (改正 95·8·4)

第16條 (生活廢棄物保管施設등의 設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
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廢棄物排出者로 하여금 總理令이 정하는 基
準에 의한 生活廢棄物保管施設 또는 容器를 設置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주 66)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生活廢棄物排出者가 設置하는 保管施設 또는 容器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生活廢棄物排出者에게 그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5・8・4>

第17條 내지 第23條 削除 <95・8・4>

第24條 (事業場廢棄物排出者의 義務등) ①事業場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改正 95・8・4>

1. 事業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廢棄物을 適切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生産工程에 있어서는 技術開發 및 再活用등의 방법으로 事業場廢棄物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抑制하여야 한다.

②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事業場廢棄物의 種類・發生量등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中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申告받은 사항中 指定廢棄物에 관한 사항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를 거쳐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③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事業場廢棄物의 發生量・再利用 및 再生利用狀況・處理實績등을 記錄하되, 그 보존기간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3年으로 한다. <改正 95・8・4>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 및 규모이상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廢棄物의 發生抑制를 위하여 環境部長官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 <新設 95・8・4>

⑤環境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指針을 正當한 사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事業場廢棄物排出者에 대하여는 事業場廢棄物의 發生抑制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新設 95・8・4>

第25條 (事業場廢棄物의 처리) ①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그의 事業場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者,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廢棄物을 再生處理하는 者,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改正 95・8・4>

(주 66)

② 및 ③ 削除 (95·8·4)

④ 事業場廢棄物 중 指定廢棄物을 運搬·처리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그 運搬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⑤ 2이상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각각의 事業場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收集·運搬·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을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 (新設 95·8·4)

⑥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事業場廢棄物을 처리하는 者가 事業場廢棄物을 처리함에 있어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收集·보관·運搬 또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당해 事業場廢棄物을 처리하는 者에게 收集·보관·運搬 또는 처리방법의 變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2·12·8, 95·8·4)

第3章 廢棄物處理業 등

第26條 (廢棄物處理業) ① 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業(이하 “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資本金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道知事の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指定廢棄物을 대상으로 하여 廢棄物處理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廢棄物處理業의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廢棄物收集·運搬業

廢棄物을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2. 廢棄物中間處理業

廢棄物中間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燒却·中和·破碎·固形化등의 방법에 의하여 中間處理하는 營業

3. 廢棄物最終處理業

廢棄物最終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埋立·海域排出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營業

4. 廢棄物再生處理業

(註 66)

廢棄物中間處理施設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再生處理하는 營業

5. 廢棄物綜合處理業

廢棄物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再生處理, 中間處理,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營業

③第2項第2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廢棄物處理業 許可를 받은 者는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收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그 處理對象廢棄物을 스스로 收集·運搬할 수 있다.

④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營業區域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그 營業區域의 제한은 廢棄物收集·運搬業의 경우에 한한다.

(全文改正 95·8·4)

第27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未成年者·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廢棄物處理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로서 그 許可가 取消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全文改正 95·8·4)

第28條 (許可의 取消등)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廢棄物處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第27條第1號 내지 第4號 또는 第6號에 해당된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27條第6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2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 66)

第6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 95·8·4>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 또는 보관한 者
2. 내지 4. 削除 <95·8·4>
5.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制限 또는 조건을 위반한 者
6.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變更한 者
- 6의2.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7. 第3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施設을 유지·管理한 者
8. 第24條第2項·第25條第4項 또는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9. 및 10. 削除 <95·8·4>
11. 削除 <92·12·8>
12.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하거나 技術管理代行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者
13.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4. 및 15. 削除 <95·8·4>

第6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9條 내지 第6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63條 (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5·8·4>

1. 第2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2. 第30條第3項 또는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事項을 변경한 者
3. 第44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使用制限命令을 위반한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8·4>

(추 66)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버린 者
 2.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1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命令 또는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4.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者
 5.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施設의 使用를 開始한 者
 6.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를 한 者
 7. 第4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 또는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8.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者
 9.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10.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11.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별로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5·8·4>
-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 부터 30日 이내에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8·4>
-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5·8·4>
-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5·8·4>

附 則

(주 66)

1. 해 안
2. 수산물의 생산 또는 보존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3. 도로변·철도변 또는 관광지로서 환경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4. 농업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5.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의 취수원으로부터 1만5천미터(광역상수원인 경우는 3만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6. 원자력법에 의한 제한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제 2 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 6 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것. 다만, 시·군·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직접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6·1·19]

제 7 조 (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 의무 대상사업자)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96·1·19]

제 7 조의2 삭제 (96·1·19)

(추 70)

제 5 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법 제 8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7·7·19>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제 6 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등) ①영 제 6 조제 1 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 4 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외에 따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지도 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③영 제 6 조제 3 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산·폐알칼리등 수분함량이 15퍼센트이상이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환경보전법 제 2 조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로서 법 제 44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생처리하는 경우 또는 재생처리신고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제품의 원료·재료 또는 연료등으로 재생처리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사료화·퇴비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 1 호 다목 내지 바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규모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제 7 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13 조제 1

(추 86)

[별표 3]

광제 · 분진 · 폐주물사 · 폐사 · 폐내화물 · 도자기편류 · 소각잔재물 ·
안정화 또는 고정화처리물 · 폐촉매 · 폐흡착제 · 폐흡수제 · 오탁액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3항관련)

1. 납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관리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관리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관리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이상의 비소를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관리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관리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6. 6가크롬화합물(폐기물관리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이상의 6가크롬을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7. 시안화합물(폐기물관리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이상의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8. 유기인화합물(폐기물관리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이상의 유기인화합물을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폐기물관리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0.1밀리그램이상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10. 트리클로로에틸렌(폐기물관리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이상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11.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4] <개정 97.7.19>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6조제1항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생활폐기물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처리신고를

(추 86)

㉔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㉕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하여 관리형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㉖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1일 폐수배출량 2,000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수를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 처리후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㉗2005년 1월 1일 이후에는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000세제곱미터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수를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 처리후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퇴비화·사료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농·축산가 또는 퇴비·사료제조업자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영업소별 객실(객실을 포함한다)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감량 또는 재활용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2)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야 한다.

다.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추 89)

사 료 관 리 법

第25編 畜 産 第3章 草地・飼料 飼料管理法

수 있다. <改正 94.12.31, 96.8.8>

1. 輸入飼料

2. 配合飼料

3. 政府管理糧穀 또는 輸入糧穀의 副産物인 飼料

4. 第1號 내지 第3號 이외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飼料

第7條 (飼料의 用途의 販賣禁止) 누구든지 第6條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의 飼料를 農林部令이 정하는 用途 이외로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4.12.31, 96.8.8>

第8條 (買占・賣惜의 금지)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暴利를 目的으로 飼料를 買占하거나 飼料의 製造 또는 販賣를 忌避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章 品質管理

第9條 (製造業의 登錄등) ①配合飼料 또는 補助飼料의 製造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4.12.31, 96.8.8>

②單味飼料의 製造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94.12.31, 96.8.8>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適合한 要件과 製造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4.12.31, 96.8.8>

④削除 <94.12.31>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가 그 施設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長官 또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4.12.31, 96.8.8>

⑥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가 그 營業을 讓渡・賃貸・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날로부터 20日 이내에 이를 農林部長官 또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94.12.31, 96.8.8>

⑦民事訴訟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 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製造施設의 전부

(후 75)

를 引受한 者가 農林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引受申告를 한 때에는 製造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製造業의 登錄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改正 94.12.31, 96.8.8)

第10條 削除 (94.12.31)

第11條 (公定規格의 設定등) ①農林部長官은 飼料의 品質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飼料의 種類를 指定하여 그 種類別 成分의 最小量 또는 最大量과 기타 事項에 관하여 필요한 規格(이하 “公定規格”이라 한다)을 設定·變更하거나 이를 廢止할 수 있다. (改正 94.12.31, 96.8.8)

②農林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定規格을 設定·變更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 그 施行日 30日전에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4.12.31, 96.8.8)

第12條 (飼料의 成分登錄 및 取消) ①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道知事에게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飼料의 종류·成分 및 成分量에 관한 사항을 登錄(이하 “成分登錄”이라 한다)하되, 公定規格이 設定된 飼料의 경우에는 公定規格에 適合하여야 한다. 다만, 農林部令이 定하는 飼料는 成分登錄을 하지 아니한다. (改正 84.12.31, 94.12.31, 96.8.8)

②道知事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內容을 확인하고, 飼料成分登錄證을 당해 申請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③道知事は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取消한다. 이 경우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그 飼料成分登錄證을 道知事에게 返納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94.12.31)

1.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成分登錄한 飼料를 正當한 사유없이 1年이상 製造 또는 輸入을 하지 아니한 때
3. 製造業 또는 貿易業의 登錄이 取消된 때
4. 第1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飼料成分登錄事項 및 品質檢査의 結果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표시한 때

第13條 (飼料成分登錄事項의 表示등) ①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製造 또는 輸入한 飼料를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容器나 包裝에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사항과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品質檢査의 結果 기타

(주 75)

비료관리법

第24回 農 業 第5章 農政 肥料管理法

第9條 (肥料最高販賣價格의 지정) 農林部長官은 肥料의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物價安定에 관한法律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의 最高販賣價格을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6·8·8)

第10條 (危害性肥料등의 輸入制限) ①農林部長官은 重金屬이 含有되어 있거나 病害蟲이 流入되어 土壤環境 및 植物에 重大한 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普通肥料중 有機質肥料 및 副產物肥料과 그 原料에 관하여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 輸入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6·8·8)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重大한 危害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普通肥料중 有機質肥料 및 副產物肥料과 그 原料에 관하여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機關으로 하여금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8·8)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危害性의 기준 및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肥料의 生産業 및 輸入業 登錄) ①肥料를 生産 또는 輸入하여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窒素, 磷液, 加里중 1이상의 成分을 含有하는 無機質肥料로 化學的 作用에 의하여 生産되는 肥料(이하 “3要素化學肥料”라 한다)를 生産하여 販賣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通商産業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6·8·8)

②通商産業部長官이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3要素化學肥料의 生産業 登錄을 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6·8·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肥料의 生産業 및 輸入業의 登錄에 필요한 施設 기타 登錄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副產物肥料의 生産業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肥料生産業者 또는 肥料輸入業者는 登錄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休業·廢業한 때 또는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農林部長官 또는 通商産業部長官(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6·8·8)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肥料의 生産業 및 輸入業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 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6·8·8)

第12條 (肥料의 販賣業 申告) ①肥料의 販賣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

(주 77)

관 련 사 업 계 획 서

1. 음식물쓰레기 혐기성퇴비화시설 설치

☐ 사 업 비 : 3,000 백만원 (도비 1,500 , 시비 1,500)

☐ 사업내역

○ 위 치 : 파주읍 봉암리 1039-4 (축산폐수처리시설부지내)

○ 규 모 : 300 평

○ 용 량 : 30 톤/일

○ 준 공 : '98. 12월

☐ 예산과목 : 장)사회개발비 관)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
세항)환경관리 세세항)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
목)시설비등 세목)시설비

2.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 구입

☐ 사 업 비 : 105,000천원 (도비 31,500 , 시비 73,500)

☐ 사업내역 : 2.5톤 × 3대

☐ 예산과목 : 장)사회개발비 관)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
세항)청소관리 세세항)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
목)자산취득비 세목)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 기 도

우 441-701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번지/전화 (0331) 249-3522 (FAX 3529) 담당: 안만호

문서번호 청소 67500 - 2280

시행일자 1997. 12. 30.

받 음 받는곳참조

참 조 환경보호 (청소) 과장

선결	과 장		지		
접	일자	97. 1. 3	시		
수	번호	9	결	계 장	
치 리 과	환경보호과		재		
담 당 자	김부진		공		
			람	주관 부서 환경보호과	

제 목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시달

1. 청소 67500 - 2100 ('97. 11. 20) 호와 관련입니다.

2.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 수수료 부과, 징수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조례준칙을 제정, 시달하오니 귀시, 군 조례에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에 따라 조례를 제, 개정한 시, 군에서는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받는곳 : 리

' 신한국 창조는 신경기인 운동으로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안) 제정

I. 목적

-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등을 조례로 제·개정토록 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II. 필요성

- '97. 7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자치단체별 조례 제·개정등 후속조치 미흡
-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 혼입 및 봉투재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도입하여 재활용촉진 필요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을 조례로 규정하여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법적용의 형평성 유지
-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재활용 확대

III. 기본원칙

-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 도입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1일 300kg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사용시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함
-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시설을 설치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함

IV. 세부 지침개정 방향

1.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자치단체의 장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함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1일 300kg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스스로 또는 위탁재활용하거나 자가 감량처리토록 배출방법을 조례로 규정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 적용)
 -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처리업자중 퇴비화·사료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퇴비·사료 생산업허가를 받은 자, 퇴비·사료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재활용하거나 스스로 퇴비·사료등으로 재활용
 -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고,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이행신고,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투명하게 제작하고 색상은 흰색 또는 노랑색으로 통일하며, 전용봉투의 용량은 5ℓ, 10ℓ, 20ℓ, 30ℓ, 50ℓ를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5ℓ 미만도 제작가능토록 함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하고 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여야 하며, 용량은 120ℓ, 240ℓ를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장이 수거체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우선 실시지역

-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로 수거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홍보, 수수료 부과 및 관리 용이성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공동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함

2.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을 위하여 전용봉투사용시 공동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전용봉투 미사용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되 기계식상차가 가능토록 규격등을 정하도록 함
-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환용토록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환용하도록 함

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재환용 수수료의 부과징수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전용봉투 사용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격과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산정은 일반용 봉투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재환용비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을 총세대수로 배분하여 세대당 일정금액을 산정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하도록 함

3.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확대

- 자치단체의 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처리를 대행 가능토록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수요자 연계·알선을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및 재활용할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재활용자(퇴비화·사료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퇴비·사료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퇴비·사료 재생이용 농·축산가등)에게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함
- 자치단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폐기물처리업체이외의 자도 수거·운반 및 재활용이 가능토록 확대

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 시설에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는 경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재활용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4. 기타사항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1일배출량 300kg이하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미이행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유지
- 일정규모(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신축시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를 하도록 하고, 적정 보관시설 및 수거용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치 및 개선 조치명령을 명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제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

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여부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1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예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찌꺼기	- 이물질(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상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제2항 관련)	30	50	100

< 별지 1호서식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 일고 자	치 리 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치 리 자
		kg/일		kg/월	kg/월		
자가재환 용계획	재환용량		재환용방법		재환용장소		
	kg/월						
위탁재환 용계획	위탁재환용량	재환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폐기물관리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사업장명 : _____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감량			재활용			
		자가감량 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출자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식점 : 객실·객실 합계면적 : m'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 환 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위탁량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위와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